투자 중개업자 선정 기준

2009. 2. 4 제정
2011. 7. 1 개정

제1조 (목적)

이 기준은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① 이 기준은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상장 지분증권의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.

② 상장증권 블록매매, 장외증권과 장외파생상품 매매, 상장공모지분증권, 장내파생상품 및 채무증권 매매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③ 사모형 펀드의 편입자산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업의 선정에 있어서 당해 펀드의 수익자 혹은 판매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되 수익자 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 (평가의 방법)

① 거래대상증권사에 대한 평가는 매월 실시한다.

② 거래대상증권사는 20개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(괄호 안 숫자는 가중치)

1.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(60)
   자료 및 정보의 질, 펀드성과 기여도(30)
  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(30)
2. 주문집행능력(30)
   주문집행의 정확성, 신속성, 상황대응능력, 사고건수 등
3. 판매기여도(10)

④ 채점은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증권사별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산출한다.
⑤ 평가기준별 점수를 증권사별로 합산한다.
⑥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각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.
⑦ 전체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된 각 중개회사에 대해 수수료 총액에 대한 배분비중을 정한다.
⑧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사 이외의 증권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수수료 총액의 5%범위 이내에서 배분할 수 있다.

제4조 (평가의 수행 및 처리절차)
①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은 중개회사평가선정위원회가 수행한다.
② 중개회사평가선정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운용, 매매,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각 1인 이상,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③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결과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 (매매주문량의 확인 및 관리)
준법감시인은 각 투자중개업자에 배정된 주문량을 매월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6조 (거래대상 중개회사 평가표)
거래대상중개회사 평가표는 첨부와 같다.

제7조 (보관 및 관리)
거래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는 소관 본부장은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중개업자 평가표 및 그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첨부>

거래대상 중개회사 평가표

회사명	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			주문집행 능력	판매 기여도	평가점수 총계	회사별 수수료 배분 비중	회사별 수수료율 (주식형/혼합주식,혼합채권형 동일)		
	조사자료의 질과 유용성	기업탐방 및 세미나 주선	소계					매매 수수료율	조사분석 서비스 수수료율	총 수수료율
	30	30	60	30	10	100				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2조 (적용범위) ② 상장증권 블록매매, 장외증권과 장외파생상품 매매, 상장공모지분증권, 장내파생상품 및 채무증권 매매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운용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.	제2조 (적용범위) ② 상장증권 블록매매, 장외증권과 장외파생상품 매매, 상장공모지분증권, 장내파생상품 및 채무증권 매매의 경우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다.
제3조 (평가의 방법) ③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(괄호 안 숫자는 가중치) 펀드성과기여도(20) 정보, 자료의 질(20) 세미나 개최(20) 기업탐방주선(20) 매매능력-체결확률 및 사고건수 등(10) 판매기여도(10) 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사 이외의 증권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약정의 5%범위 이내에서 분배할 수 있다.	제3조 (평가의 방법) ③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(괄호 안 숫자는 가중치) 1.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(60) 자료 및 정보의 질, 펀드성과 기여도(30)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(30) 2. 주문집행능력(30) 주문집행의 정확성, 신속성, 상황대응능력, 사고건수 등 3. 판매기여도(10) ⑥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각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.(신설) ⑦ 전체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된 각 중개회사에 대해 수수료 총액에 대한 배분비중을 정한다.(신설) ⑧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사 이외의 증권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수수료 총액의 5%범위 이내에서 배분할 수 있다.
제4조 (평가결과의 처리 절차) 거래대상증권사에 대한 평가는 주식운용본부 및 Trader가 담당하며,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4조 (평가의 수행 및 처리절차) ①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은 중개회사평가선정위원회가 수행한다. ② 중개회사평가선정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운용, 매매,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각 1인 이상,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③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 및 선정결과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